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70 발의연월일: 2021. 12. 17.

발 의 자 : 노웅래・양기대・이수진(비)

이해식 • 이장섭 • 윤준병

송옥주 · 신정훈 · 양이원영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조정한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측기관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추진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기상관측망 설치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망에 포함되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이하'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설치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를 포함한 자체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계획을 제출받으면 검토 ·조정한 후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설치계획에 따라 관측시설의 설치·변경·이전 또는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통보를"을 "점검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로,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출받으면 제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기상관측환경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 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제23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관측시설의 설치·이전·교체 또는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기상관측망 설치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상관측망에 포함되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기
	<u> 상관측망 설치계획(이하'설치</u>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
	진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설치계획의 수립
	을 위해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
	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
	는 폐지를 포함한 자체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자체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u>한다.</u>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
	라 제출한 자체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체계획을 제출받으면
	<u>검토·조정한 후 설치계획을 확</u>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 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생 략)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 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 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설치 계획에 따라 관측시설의 설치・ 변경ㆍ이전 또는 폐지를 추진해 야 한다.

⑥ 그 밖에 설치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 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 ② ----- 점검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 ------- 관측시설의 기 상관측환경 개선방안(이하'개 선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 선방안을 제출받으면 제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환경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방 안을 확정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개선

<u>③</u> ~ <u>⑤</u> (생 략)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u> 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u>⑤</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 제23조(시정 권고) ------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관측 시설의 설치·이전·교체 또 는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 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선방 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